

저작권법 시행령

<목 차>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2.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3.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
4. 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
5. 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의 요건
6.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7. 영업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양성미
	담당부서 (과)	저작권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최영진		연락처	044-203-2482
	과장	안미정		이메일	mymariah20@mail.go.kr

2026. 08. 19. 작성

저작권정책관

성명 : 최영진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2.규제조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3									
	3.위임법령	저작권법 제105조의2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24.~2026.09.0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저작권법」 개정('26.4.28.)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적정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이후 시정명령 등의 사후적 관리·감독 제도로 단체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으나 한계가 있었음. 이에 저작권 신탁관리업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허가제 운영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7.규제내용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설정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적 요건과 재허가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이해관계자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저작권신탁관리업자</td><td>총 12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 12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 12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창작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 하고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심사에 따른 단체의 행정적 부담 발생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제 운영체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주요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제도 도입을 통해 주기적 으로 단체 운영의 적정성을 재확인하여 허가제 운영 체계 강화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9조의 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법 제105조의2 제3항 각호에 따른 재허가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집중관리 분야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는 만큼,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 기존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이후 시정명령 등의 사후적 관리·감독 제도로 단체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으나 한계가 있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여 권리자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 개정된 「저작권법」이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제105조의2제1항, '26.10.29. 시행 예정) >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설정
	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적 요건과 재허가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규제대안2	대안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미설정
	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음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제도 도입으로 독점적 허가에 따른 창작자의 경제적 피해 방지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심사에 따른 단체의 행정적 부담 발생
규제대안2	업계 부담 완화	저작권신탁관리업 독점적 허가에 따른 창작자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한계 존재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방송작가협회	'26.6.10./저작권국 회의실/대면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마련 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	수용/ '26.7.9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보상금수령단체	'26.7.9./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대면	재허가 유효기간은 신청자가 신청한 기간대로 부여하도록 하되 신청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부여 하는 경우 사유 통지 등 필요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불수용/ 저작권신탁관리 단체의 독점적 지위 보유에 따른 재허가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재허가 유효기간은 심사사항을 고려 하여 부여하는 것이 적절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기간(2년 이상 등) 설정 필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불수용/ 저작권신탁관리 단체의 독점적 지위 보유에 따른 재허가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시행령에 최소한의 허가 기간을 명시 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대안1 선택**
- (근거) 저작권법 개정('26.4.28.)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제도 근거가 신설되어 **'26.10.29.부터 본격 시행** 예정
 - － 법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
 - －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재허가 기간을 법에서 정한 최대 허가기간인 5년 이내로 설정

3. 규제 목표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단체 운영의 적정성을 재확인함으로써, 독점적 허가에 따른 창작자의 경제적 피해 방지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제도는 단체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되었음
- 재허가 절차는 기존 허가 요건의 이행 여부와 수수료의 적정성 등 법적 심사 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규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이 충족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어려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국가명	규제 내용	세부 내용
호주	저작권신탁관리 단체 공동관리행위의 경쟁법 적용 면제 인가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경쟁 및 소비자법(이하 경쟁법)」 상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ACCC(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인가** 필요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다수의 권리자를 대신하여 이용 허락 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사용료를 공동으로 징수·분배하는데 이는 경쟁법 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ACCC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시 일정 기간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인가 실시

○ 타법사례

-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방송사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음(「방송법」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방송법」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설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규제대안 1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설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시행령의 내용은 독점적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단체의 공정·투명한 운영을 유도하여 창작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인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기존 허가 요건에 따라 인력 등의 운영체계를 이미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음
- 본 규제는 기존 허가 요건의 이행 여부와 수수료의 적정성 등 법적 심사사항의 충족 여부를 일정 기간마다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충분히 이행 가능하여 규제 준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조직, 인력 수준으로 규제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저작권법」 개정('26.4.28.)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보상금수령단체 의견수렴('26.7.9.)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령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 49 조 의 3, 제 49 조 의 4, 제 51 조 의 4, 제 51 조 의 5, 제 51 조 의 7, 제 51 조 의 8, 제 53 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저작권신탁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기존 허가 요건의 이행 여부와 수수료의 적정성 등 법적 심사사항의 충족 여부를 일정 기간마다 확인하는 절차로서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단체의 공정·투명한 운영을 유도하여 창작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기존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별도의 재정 소요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확보됨에 따라 본 규제는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타당한 제도 개선으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시행령의 내용은 독점적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단체의 공정·투명한 운영을 유도하여 창작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설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활동제목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신청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일반 현황) '26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12개(문체부 허가 기준)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권리자, 이용자
활동제목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확인
편익항목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확인함으로써 개별 권리자 회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허가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하여금 더욱 더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일반현황) '25년 저작권신탁관리업(12개) 회원 수 : 153,405명/처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2.규제조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4								
	3.위임법령	저작권법 제105조의4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24~2026.09.0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신탁관리 단체의 대리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총회 의결권(전자투표권 포함) 등 회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신탁관리단체가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민주성 제고 필요								
	7.규제내용	○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규정 － 회원이 비영리 목적의 직접 이용허락을 한 경우 통보 절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규정 및 변경 내역 정보제공 절차 － 전자투표 실시 절차 － 대리인을 통한 총회 의결권 행사 절차 － 직전년도 대비 임원의 보수수당 인상 시 결정 절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이해관계자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저작권신탁관리업자</td><td>총 12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 12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 12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회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함으로써 회원의 권리 강화 및 조직 운영의 민주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전자투표 실시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절차 마련	회원의 권리 강화 및 조직 운영의 민주성 제고						
		주요내용	○ 전자투표 실시 등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발생							

			하나, 총회 의결권 등 회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9조의4(권리행사 요건 및 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이 법 제105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영리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용허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영리 목적의 이용의 범위에 관해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및 그 변경내역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이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투표에 관한 업무를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 제4호에 따라 동일 등급의 회원만을 대리인(미성년자 등의 법정대리인은 제외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선출안건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 제5호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이 직전년도 대비 인상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총회에서 회원들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신탁관리단체의 대리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개정된 「저작권법」이 총회 의결권(전자투표권 포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제105조의4, '26.10.29. 시행 예정) >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함
-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규정
	내용	총회 의결권(전자투표권 포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마련 의무 부여
규제대안2	대안명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 미보장
	내용	총회 의결권(전자투표권 포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기존처럼 업계의 자율에 맡김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총회 의결권(전자투표권 포함) 등 회원 권리 강화를 위한 절차 시행 기반 마련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규정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 발생

규제대안2	업계 부담 완화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
-------	----------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방송작가협회	'26.6.10./저작권국 회의실/대면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마련 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	수용/ '26.7.9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보상금수령단체	'26.7.9./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대면	회원의 비영리 목적 직접 이용허락 관련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주무부처 승인 필요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수용/ 의견수렴 개정안 수정(비영리 목적의 이용허락 범위는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규정)
		회원 등급제 운영 (동일 등급의 회원만을 대리인으로 지정 가능) 관련 미성년자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 필요 임원 선출 안전에 대해서는 대리권 행사 제한 필요(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수용/ 의견수렴 개정안 수정 (△ 대리인 범위에서 미성년자 등의 법정대리인 제외, △ 임원 선출 안전에 대해 대리권 행사 제한 명시)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대안1 선택**
- (근거) 저작권법 개정('26.4.28.)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이 보장되어 **'26.10.29.부터 본격 시행 예정**
 - － 법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총회 의결권(전자투표권 포함) 등 저작권 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필요**

- 이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규제목표

- 총회 의결권(전자투표권 포함)과 같은 회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함으로써 회원의 권리 강화 및 조직 운영의 민주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이 위임한 총회 의결권(전자투표권 포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여 신탁관리단체가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이 충족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어려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국가명	규제 내용	세부 내용
프랑스	회원의 총회 의결권 행사 보장	- SACEM(프랑스 작곡·작사가음악출판인 협회)은 모든 회원에게 총회 의결권 부여하고 가중투표제를 운영(최대 15표) ※ 프랑스 「저작권법」 제323-8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모든 회원은 법률, 정관 및 일반규정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권리가 있다. (이하 생략)
독일		- GEMA(독일음악저작권협회)는 정회원 5,000명(5%) 및 준회원 64명(95,000명의 준회원 대리)이 총회 의결권 행사 ※ 독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법」 제20조(비회원 자격자의 참여) ① 비회원 자격자들은 4년마다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② 집중관리단체는 정관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 대의원의 수 및 구성 2. 대의원 선출 절차 3. 대의원이 회원총회에 참여할 권리
독일	비영리 목적 직접 이용허락	- 권리자가 비영리적 이용에 대해 직접 이용 허락할 수 있도록 허용 ※ 독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법」 제11조(비영리적 이용) 집중 관리단체는 권리자가 자신이 관리권을 집중관리단체에 위임 했더라도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해 제3자에게 이용 허락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해야 한다.

○ 타법사례

-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는 각 사원의 결의권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 규제대안 1 :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규정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규제대안 1 :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시행령의 내용은 총회 의결권(전자투표권 포함)과 같이 회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함으로써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도 일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회원의 권한 차등(정회원, 준회원)을 통한 총회 의결권 부여, 업무규정(신탁약관·분배규정) 통보, 전자투표제 운영 등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피규제자의 수용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도 일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회원의 권한 차등(정회원, 준회원)을 통한 총회 의결권 부여, 업무규정(신탁약관·분배규정) 통보, 전자투표제 운영 등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전자투표 실시를 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나, 현재도 일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저작권법」 개정('26.4.28.)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보상금수령단체 의견수렴('26.7.9.)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령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 49 조 의 3, 제 49 조 의 4, 제 51 조 의 4, 제 51 조 의 5, 제 51 조 의 7, 제 51 조 의 8, 제 53 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저작권법 일부개정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회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함으로써 회원의 권리 강화 및 조직 운영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시행령의 내용은 총회 의결권(전자투표권 포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회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함으로써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현재 일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회원의 권한 차등(정회원, 준회원)을 통한 총회 의결권 부여, 업무규정(신탁약관·분배규정) 통보, 전자투표제 운영 등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활동제목	총회 의결권(전자투표권 포함) 등 회원의 권리 행사 보장
비용항목	재정적, 행정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일반 현황) '26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12개(문체부 허가 기준)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저작물 권리자
활동제목	총회 의결권 등 회원의 권리 행사
편익항목	비영리 목적 직접 이용허락,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 등 회원의 권리 행사로 조직 사유화 방지 및 권리자 재산권 보호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일반현황) '25년 저작권신탁관리업(12개) 회원 수 : 153,405명/처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									
	2.규제조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4									
	3.위임법령	저작권법 제106조제7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24~2026.09.0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분배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의 회계 및 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투명성 강화와 조직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경영인제 도입 필요									
	7.규제내용	○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단체의 기준 설정 – 직전년도의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같은 연도의 수수료 수납액이 20억 원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 이해관계자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td><td>총 13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총 13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총 13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통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투명성 강화와 조직 운영의 전문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전문경영인 선임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정관 개정 등 행정적 부담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보상금수령단체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주요내용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전문경영인 선임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나,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통해 단체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1조의4(전문경영인 기준규모) 법 제106조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는 직전연도의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같은 연도의 수수료 수납액이 20억 원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단체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저작권법」이 전문경영인을 의무로 도입해야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제106조제7항, '26.10.29. 시행 예정)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
	내용	직전년도의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같은 연도의 수수료 수납액이 20억 원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부여
규제대안2	대안명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대상 단체의 기준 미설정
	내용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대상 단체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업계의 자율에 맡김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대상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규제에 대한 수용성 및 예측성을 제고	전문경영인 선임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 발생
규제대안2	업계 부담 완화	회계 및 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단체 운영의 효율성 저하
--	--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방송작가협회	'26.6.10./저작권국 회의실/대면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마련 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	수용/ '26.7.9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보상금수령단체	'26.7.9./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대면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대상 단체 기준 관련 사용료 징수액 규모 상향 조정, 사용료 징수액 외에 관리수수료 추가 필요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수용/ 의견수렴 개정안 수정 (△ 사용료 징수액 기준 상향 (100억 원 이상 → 200억 원 이상), △관리수수료 수납액 20억 원 이상 신설)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대상 단체의 기준을 설정한 **대안1 선택**
- (근거) 저작권법 개정('26.4.28.)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근거가 신설**되어 **'26.10.29.부터 본격 시행** 예정
 - － 법에서 전문경영인을 의무로 도입해야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대상 단체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
- 전문경영인제 도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징수액, 관리수수료 규모를 고려하여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단체의 기준 설정

3. 규제 목표

-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피규제자의 규제 수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제도 준수의 실효성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전문경영인제를 도입·운영중인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보상금수령 단체의 현황을 고려하여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 관리수수료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어려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국가명 (저작권단체)	규제 내용	세부 내용
미국 (ASCAP)	전문경영인 운영	- 회원이 선출하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정책 결정, CEO(Chief Executive Officer)가 조직의 경영·집행 담당
영국 (PRS for Music)		- 의장(Chairman)과 이사회(Board)는 전략과 감독, CEO는 조직 운영과 직원 관리
독일 (GEMA)		- 감독기구(Supervisory Board)는 조직 경영 감시, CEO는 조직 경영책임
프랑스 (SACEM)		- 회원이 선출하는 이사회는 정책 결정과 감독 기능 수행, 전문경영인(Director General)은 경영 담당

○ 타법사례

-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조합부터 조합 경영을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음(「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4(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1항 후단(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규제대안 1 :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시행령의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부터 단체 경영을 전문경영인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그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업무점검 시 시정명령(전문경영인제 도입)으로 부과한 사안과 동일*하여 피규제 대상의 준수 가능성 높음

* '11, '16~'24(한국음악저작권협회, 10회)/'16(한국방송작가협회, 1회)부터 지속적으로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시정명령 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단체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정관 개정, 전문경영인 채용 공고 등을 실시하므로,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인적 자원 없이 행정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전문경영인 선임을 위한 재정이 추가로 수반됨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만 의무화하였으므로, 규제 집행을 위한 재정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저작권법」 개정('26.4.28.)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보상금수령단체 의견수렴('26.7.9.)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령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 49 조 의 3, 제 49 조 의 4, 제 51 조 의 4, 제 51 조 의 5, 제 51 조 의 7, 제 51 조 의 8, 제 53 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저작권법 일부개정으로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단체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단체의 투명성 강화 및 조직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시행령의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부터 단체 경영을 전문경영인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시행령에 따른 의무 도입 대상 단체인 2개 단체(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실연자 권리협회)는 전문경영인제를 이미 도입하여 운영중으로 새로운 행위제한 또는 제재를 도입한 것이 아님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활동제목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화
비용항목	재정적, 행정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일반 현황) '26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13개(문체부 허가, 지정 기준) ○ (소요예산) 단체별 상이(이사회 등 내부 의결로 확정) ○ (근거) 단체 내부규정(전문경영인 선출 규정)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저작권, 조직 경영·관리, 행정 업무 종사자
활동제목	전문경영인 채용 공고 응시 및 합격
편익항목	전문경영인으로 선임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일반현황) 3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전문경영인 선임('26년 8월 현재) ○ (근거) 단체 정관 및 내부규정(전문경영인 선출 규정)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								
	2.규제조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5								
	3.위임법령	저작권법 제106의3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24~2026.09.0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신탁관리단체의 ‘대리인 문제’가 심각 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서는 전자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7.규제내용	○ 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 －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이해관계자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저작권신탁관리업자</td><td>총 12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 12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전체 회원의 접근성을 높여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 으로 보장함으로써 단체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전자총회 개최에 따른 추가 비용	저작권신탁관리업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전자총회 개최를 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나, 전자총회 개최를 통해 전체 회원의 접근성을 높여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으로써 단체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 정예외 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1조의5(전자총회 개최 규모) 법 제106조의3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억원을 말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전체 회원의 접근성을 높여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단체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저작권법」이 전자총회를 의무로 개최해야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제106의3, '26.10.29. 시행 예정) >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 (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음. 다만,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
	내용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해 전자총회 개최 의무 부여
규제대안2	대안명	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의 기준 미설정
	내용	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단체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업계의 자율에 맡김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규제에 대한 수용성 및 예측성을 제고	전자총회 개최를 위한 재정적 부담 발생
규제대안2	업계 부담 완화	전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로 전체 회원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단체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저하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방송작가협회	'26.6.10./저작권국 회의실/대면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마련 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	수용/ '26.7.9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보상금수령단체	'26.7.9./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대면	안 제51조의5가 '28년부터 적용 될 수 있도록 징수액 규모 상향 필요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불수용/ 저작권신탁관리 단체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해소하여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시기의 유예는 적절하지 않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 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의 기준을 설정한 **대안1 선택**
- (근거) 저작권법 개정('26.4.28.)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 관리업자에게 전자총회 개최 의무 근거가 신설되어 **'27.1.1.부터 본격 시행 예정**
 - － 법에서 전자총회를 의무로 개최해야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
 -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징수액과 회원 의결권 보장현황을 고려하여 전자총회 의무 개최 단체의 기준 설정

3. 규제목표

- 전자총회 개최 의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피규제자의 규제 수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제도 준수의 실효성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회원 의사결정권 보장의 효율성 및 전자총회 개최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함을 고려하여, 회원 수와 사용료 징수액 규모가 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한정하여 전자총회 의무 개최 단체로 규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전자총회 개최 의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몰
기한을 설정하기 어려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국가명	규제 내용	세부 내용
프랑스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 보장	- 단체 회원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는 회원 가입 기간 또는 회원의 저작권자산권 이용에 따라 받았거나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수입 액수에 따라 정관 또는 일반규정으로 제한함(저작권법 제323-8조)

○ 타법사례

- 「상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전자주주 총회 개최를 의무화 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14)

「상법」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 규제대안 1 : 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규제대안 1 : 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시행령의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해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단체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전자총회 개최 의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대규모 저작권 신탁관리업이므로 규제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단체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전자총회를 개최하므로,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인적 자원 없이 행정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전자총회 개최를 위한 재정이 추가로 수반됨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만 의무화하였으므로, 규제 집행을 위한 재정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저작권법」 개정('26.4.28.)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보상금수령단체 의견수렴('26.7.9.)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령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 49 조 의 3, 제 49 조 의 4, 제 51 조 의 4, 제 51 조 의 5, 제 51 조 의 7, 제 51 조 의 8, 제 53 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저작권법 일부개정으로 전자총회 의무 개최 단체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단체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시행령의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 대해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단체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시행령에 따른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현재 전자 총회와 유사한 온라인 이사회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활동제목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전자총회 개최 의무화
비용항목	전자총회 개최비용 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일반 현황) '26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12개(문체부 허가 기준) ○ (소요예산) 단체별 상이(회원 수 등 규모에 편차 존재)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저작물 권리자
활동제목	전자총회 개최 시 의결권 행사
편익항목	시간 등 물리적 제약 없이 총회 의결권 행사 가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일반현황) 60,384명('25.12.31. 기준) ○ (근거) 시행령에 따른 의무 도입 대상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수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의 요건									
	2.규제조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7									
	3.위임법령	저작권법 제106의3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24~2026.09.0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총회는 현장 개최 및 현장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신탁관리단체의 ‘대리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총회를 통해 회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정비사업 조합 총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점을 반영하여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총회도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되, 전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요건 등을 규정할 필요									
	7.규제내용	○ 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의 요건 설정 － 전자총회 참석 회원의 본인확인 절차, 전자총회를 위해 사용하는 전자체계의 회원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 진행, 회원의 접속기록 등 보관, 참석 회원의 관리체계 등을 갖추도록 규정 ○ 전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총회 소집 시 전자 총회 개최여부와 접속 방법을 고지하도록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이해관계자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저작권신탁관리업자</td><td>총 12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 12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 12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전자총회 개최를 위한 법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자총회의 안정적인 개최를 위한 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보다 많은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도록 지원하여 회원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된 의사결정을 지원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전자적 체계(본인확인 절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							

			사용비용			
		주요내용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전자총회 개최를 통해 전체 회원의 접근성을 높여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회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순편익 예상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1조의7(전자총회의 개최 등) ① 저작권 신탁업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회의 의결로 법 제106조의3제3항의 전자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회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6조의3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총회에 참석한 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이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 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추어 전자총회를 개최할 것 가. 전자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사전에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나. 전자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회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다. 전자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u>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라. 총회에 참석한 회원과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u> <u>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 제3항에 따라 전자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u> <u>1. 전자총회의 개최 여부</u> <u>2. 전자총회에 접속하는 방법</u> <u>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 총회는 현장 개최 및 현장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총회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권리가 현장 총회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의 개최 요건을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저작권법」이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제106의3, '26.10.29. 시행 예정) >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 (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음.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자총회 개최를 위한 요건 규정
	내용	○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총회가 개최되므로, 총회 참석자가 회원 본인임을 확인 가능하고, 의견제시가 원활토록 하며, 현장총회와 전자총회 참석 회원이 구분되어 관리토록 규정 ○ 전자총회 개최 시에는, 총회 소집 시 전자총회 개최 여부와 접속 방법을 고지토록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전자총회 개최를 위한 요건 미규정
	내용	전자총회 개최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제약 없이 전자총회를 자유롭게 개최토록 허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전자총회 개최의 신뢰성 확보	본인확인 절차, 의견제시 기능 등이 구현된 전자 체계 활용 필요
규제대안2	자유로운 전자총회 개최 가능	법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법적 완결성 확보가 곤란하고, 전자총회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 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방송작가협회	'26.6.10./저작권국 회의실/대면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마련 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	수용/ '26.7.9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보상금수령단체	'26.7.9./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대면	정족수 산정 시 전자총회 참석자를 포함 하도록 명시 필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수용/ 의견수렴 개정안 수정 (전자총회 참석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
		원활한 전자총회 운영을 위해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수용/ 의견수렴 개정안 수정 (전자총회 참석자의 사전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51조의5가 '28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장수액 규모 상향 필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불수용/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해소하여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시기의 유예는 적절하지 않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 전자총회 개최 요건을 규정한 **대안1** 선택
- (근거) 저작권법 개정('26.4.28.)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

관리업자에게 전자총회 개최 의무 근거가 신설되어 '27.1.1.부터 본격 시행 예정

- 법에서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총회 개최 요건을 설정하여 전자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의 적법성 확보 필요

3. 규제목표

- 회원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탁 관리업 전자총회의 제도 운영을 지원
- 이를 위해, 전자총회 참석자의 본인확인 절차,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 기능, 현장/전자총회 참석 회원의 구분 관리 등 필요 최소한의 요건 등을 규정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전자총회 개최 및 의사결정의 적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총회 참석자의 본인확인 절차,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 기능, 현장/전자총회 참석 회원의 구분 관리 등 요건을 규정
- 개정안의 전자총회 개최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의 요건과 유사하여 적정 수준이라 판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전자총회 개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국가명	규제 내용	세부 내용
프랑스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 보장	- 단체 회원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는 회원 가입 기간 또는 회원의 저작권재산권 이용에 따라 받았거나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수입 액수에 따라 정관 또는 일반규정으로 제한함(저작권법 제323-8조)

○ 타법사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사결정 방식을 인정중 (「도시정비법」 제44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온라인총회)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비용편익 분석

< 규제대안 1 : 전자총회 개최를 위한 요건 규정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규제대안 1 : 전자총회 개최를 위한 요건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시행령의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전자총회 개최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전자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현장 총회를 위해 회원에 대한 총회 개최 일시·안건 등 통보 절차 등을 이미 준수 중이며,
- 시행령에 따른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현재 전자 총회와 유사한 온라인 이사회 생중계를 실시중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시행령에 따른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현재 전자 총회와 유사한 온라인 이사회 생중계를 실시중으로, 집행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전자총회 개최를 위한 재정이 추가로 수반됨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만 의무화하였으므로, 규제 집행을 위한 재정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저작권법」 개정('26.4.28.)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보상금수령단체 의견수렴('26.7.9.)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령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 49 조 의 3, 제 49 조 의 4, 제 51 조 의 4, 제 51 조 의 5, 제 51 조 의 7, 제 51 조 의 8, 제 53 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저작권법 일부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 대해 전자총회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총회 개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자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시행령의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전자총회 개최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전자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시행령에 따른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현재 전자 총회와 유사한 온라인 이사회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자총회 개최를 위한 요건 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활동제목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전자총회 개최
비용항목	전자총회 개최비용 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총회 참석 대상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전자총회 개최에 따라 전자총회 시스템 이용료(10%), 참가 안내 및 문의 대응(3%), 장애 대응 등 예비비(2%) 등 약 15%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저작물 권리자
활동제목	전자총회 참여
편익항목	시간 등 물리적 제약 없이 총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참여율 증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전자총회로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 회원의 의사결정권 보장 강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2.규제조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8									
	3.위임법령	저작권법 제106의4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24~2026.09.0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법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원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수행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임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회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 필요									
	7.규제내용	○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설정 － 이해충돌 방지·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함 － 이해충돌 방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사 및 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임원으로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이해관계자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저작권신탁관리업자</td><td>총 12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 12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 12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임원의 이해충돌 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회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을 위한 행정적 부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							

		주요내용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현재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소속 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이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이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1조의8(이해충돌 방지·관리의 기준 및 대상 임원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u> <u>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u> <u>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사 및 감사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임원</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원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수행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개정된 「저작권법」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제106의4, '26.10.29. 시행 예정) >

-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이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 기준·절차·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방법, 제3항에 따른 재산 공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설정 의무 부과
	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설정 의무 부여
규제대안2	대안명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설정의무 미부과
	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업계의 자율에 맡김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임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회원의 재산권 보호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저작권신탁관리업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설정을 위한 행정적 부담 발생
규제대안2	업계 부담 완화	소속 임원의 불공정한 행위로 신탁자의 신뢰 훼손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방송작가협회	'26.6.10./저작권국 회의실/대면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마련 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	수용/ '26.7.9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보상금수령단체	'26.7.9./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대면	전문경영인 도입 기준 등 시행령 내 타 조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세·소규모 신탁 관리단체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등 보완 필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서면 의견 제출)	불수용/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소규모 신탁 단체 적용 배제는 적절하지 않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설정 의무를 규정한 **대안1 선택**
- (근거) 저작권법 개정('26.4.28.)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설정 의무가 신설되어 **'26.10.29.부터 본격 시행** 예정
 - － 법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의 내용을 설정할 필요**

- 현재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소속 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따르도록 기준 설정

3. 규제목표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임원의 이해충돌 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회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재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소속 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따르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은 타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임원의 이해충돌 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어려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및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 규제대안 1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설정 의무 부과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규제대안 1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설정 의무 부과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시행령의 내용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설정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회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소속 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피규제자의 수용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소속 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행정적 집행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소요는 수반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저작권법」 개정('26.4.28.)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보상금수령단체 의견수렴('26.7.9.)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령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 49 조 의 3, 제 49 조 의 4, 제 51 조 의 4, 제 51 조 의 5, 제 51 조 의 7, 제 51 조 의 8, 제 53 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저작권법 일부개정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설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회원의 재산권 보호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시행령의 내용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설정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회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현재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소속 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설정 의무 부과>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활동제목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 마련
비용항목	행정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o (일반 현황) '26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12개(문체부 허가 기준)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저작물 권리자
활동제목	권리자의 신뢰 증가
편익항목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임원 등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수행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 가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일반현황) '25년 저작권신탁관리업(12개) 회원 수 : 153,405명/처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업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2.규제조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2									
	3.위임법령	저작권법 제109조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24~2026.09.0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차별적 이용허락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통해 권리자 권익 증진 및 방만경영 해소 필요 ○ 권리자 권익 및 단체의 방만경영 해소를 저해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제재 세부기준 마련									
	7.규제내용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을 구체화 －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1개월 － 차별적으로 이용허락을 한 경우 :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1개월 － 예산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3개월 －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3개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이해관계자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저작권신탁관리업자</td><td>총 12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 12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 12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세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피규제자에게 법 위반 시 제재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법 준수를 제고 및 행정처분의 이행력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행정 부담 및 처벌 위험 증가	저작권신탁관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창작자 권리 보호							

		주요내용	○ 「저작권법」에서 권리자 권익 증진 및 단체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비차별적 이용허락, 예산지침 준수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함 ○ 시행령의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시행령상의 처분기준은 타 법령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감경·가중 규정을 두어 처분기준의 비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제53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기준
	라. 법 제106조 의2제1항을 위 반 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 허락을 거부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6의 2호	1개월
	마. 법 제106조 의2제2항을 위 반 하 여 이용허락을 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6의 3호	1개월
	바. 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5호	3개월
	사. 법 제106조 제8항에 따라 공 개 해 야 하는 사항을 공 개 하 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6호	1개월
	아. 법 제108조	법 제109조	1개월

현 행	개 정 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1항제3호	
	자. 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4호	3개월
	차. 법 제10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 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7호	3개월
	카. 법 제108조 제6항에 따라 제정·고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7의 2호	3개월
	타. 법 제108조 의2에 따른 장폐기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법 제109조 제1항제8호	3개월

현행	개정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 저작권신탁 관리업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10호	3개월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비차별적 이용허락, 예산지침 준수 등의 의무가 부여됨('26.10.29 시행 예정)
-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관리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거부 의무(제106조의2제1항)를,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제106조의2제2항)를, △예산지침 준수 의무(제108조 제6항)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저작권법」 제109조는 이러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운영상 문제점이 국정감사 및 문체부 업무점검 시 다수 지적*됨
 - *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위반, 주무관청 시정명령 불이행, 예산 부적정 집행 등
- 업무규정·예산지침 준수 의무 등은 저작권신탁관리업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됨
- 「저작권법」에서 권리자 권익 및 단체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예산지침 준수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참고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예산 집행 문제 사례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4년 내부규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안마시술소 등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소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 ▲직무수행 활동비로 직원 경조금 지출(직원 여동생 결혼 축의금 지급 등)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비상근 고문에게 월 670만원의 고문료 지급, 월 한도 100만원의 업무 추진비용 법인카드 지급 및 4대 보험 제공, ▲비상근 고문의 심야시간 결제 및 사용한도 초과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영업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규정
	내용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관리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거부 금지, △비차별적 이용허락, △예산지침 준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규제대안2	대안명	「저작권법」 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미시행
	내용	처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업계의 자정작용을 기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기존 법 위반 유형에 따른 처분기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 처분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규제에 대한 수용성 및 예측성을 제고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유형별 처분 세분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양형 수준의 근원적인 한계가 존재
규제대안2	업계 부담 완화	신탁관리업무규정 · 예산지침 준수 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이 없어 권리자 보호 취약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방송작가협회	'26.6.10./저작권국 회의실/대면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마련 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	수용/ '26.7.9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보상금수령단체	'26.7.9./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대면	신설되는 수수료 수납중단 처분과 관련, 수수료 수납 중단 금액의 상한선 추가 설정 필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불수용/ 수수료 수납 중단은 수수료 수입의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조직 운영의 재원이 되는 권리

			수수료 수입을 차단하여 방만한 경영을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임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관리수수료를 사전승인제로 운영하여 수수료율의 상한을 이미 규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할 실익이 크지 않음
--	--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 영업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대안1** 선택
- (근거) 저작권법 개정('26.4.28.)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예산지침 미준수, 업무규정 위반 등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제재 근거가 신설되어 '26.10.29.부터 본격 시행 예정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등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유로 ①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거부, ②차별적으로 이용허락, ③예산지침 미준수, ④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위반 시의 경우가 신규로 추가
 - 법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업무정지 등 제재 처분의 사유와 처분 가능한 제재의 유형을 명시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예산지침 미준수 등 제재 처분의 유형에 대한 세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
 - 기존에도 업무정지 등 제재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세부 제재 기준이 존재하므로, 기존 기준 내용, 위반 행위 유형별 처분 수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설된 4가지 법 위반 행위 유형에 대한 세부 제재 기준을 설정

3. 규제목표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세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피규제자에게 법 위반 시 제재 처분의 내용과 법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유도하여 피규제자의 법·제도 준수 및 행정처분의 이행력을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기존 제재 처분 유형의 종류, 수준 등을 참고하여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신설되는 제재 처분의 유형도 기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승인 외 사용료 징수 불가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 사항 위반 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 처분 기준을 마련
- 별도의 감경·가중 재량을 두어 처분기준의 비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어려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방송법」 시행령 별표1의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방송사업자(등록·신고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외)·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록·신고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9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5호	허가·승인의 취소	등록·신고수리의 취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허가·승인의 취소	등록·신고수리의 취소
라.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마.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	허가·승인의 취소	등록·신고수리의 취소
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아.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 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차. 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1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카.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약관변경 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3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파. 법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8호의2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하.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거.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너.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0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더. 방송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2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영업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규제대안 1 :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등의 부과기준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시행령의 내용은 예산지침 미준수(저작권법 제109조제1항7의2) 등 법 위반 행위를 제재(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하기 위한 세부 처분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라·감독이 이루어 지고, 권리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한편 단체의 방만 경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예산지침 미준수 등 신설(4개)된 법 위반 행위 유형에 대한 세부 제재 기준을 기존 처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피규제 대상이 예측 가능한 처분 수위이므로 규제 준수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에 별도 행정역량이 요구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저작권법」 개정('26.4.28.)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보상금수령단체 의견수렴('26.7.9.)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령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 49 조 의 3, 제 49 조 의 4, 제 51 조 의 4, 제 51 조 의 5, 제 51 조 의 7, 제 51 조 의 8, 제 53 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저작권법 일부개정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예산지침 미준수 등 제재 처분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그 제재 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권리자 권익 증진 및 단체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

[별표 2]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기준
라. 법 제10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6의2호	1개월
마. 법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 허락을 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6의3호	1개월
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5호	3개월
사. 법 제106조제8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6호	1개월
아.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3호	1개월
자.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4호	3개월
차. 법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7호	3개월
카. 법 제108조제6항에 따라 제정·고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7의2호	3개월
타.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8호	3개월
파.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10호	3개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시행령의 내용은 예산지침 미준수(저작권법 제109조제1항7의2) 등 법 위반 행위를 제재(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하기 위한 세부 처분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권리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한편 단체의 방만 경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예산지침 준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준수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함 ○시행령의 처분 기준이 타 법령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감경·가중 규정을 두어 처분기준의 비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